

### [서식 예] 인질강요죄

# 고 소 장

 피고소인
 박
 Δ
 Δ

 ○○시
 ○구
 ○○길
 ○○

 전
 Δ
 Δ
 △
 ○○시
 ○구
 ○○길
 ○○

### 고 소 취 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을 형법 제324조의2 인질강요죄로 형사 고소하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소 원 인

고소인들은 ○○시 ○구 ○○길 ○○에서 조그마한 슈퍼를 경영하면서 무남 독녀인 여고 2년생을 슬하에 두고 오로지 딸자식이 잘되기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교육도시키며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의 귀가 시간이 평소와는 달리 많이 늦어 걱정이 된 나머지 대문 밖에서 기다렸으나 결국 자정이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아 노심초사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거친 남자 목소리의 전화가 와 "딸을 잘 보호하고 있으니 현금



3,000만원을 준비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앞으로 딸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경찰서에 알리면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고소인들은 딸을 살릴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돈 3,000만원을 준비하여 피고소인들이 지정한 약속장소에 나가 현금3,000만원을 건네 주고 감금된 딸을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하자 현금 2,000만원을 더 요구하여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소인 중 또 다른 1명이 그렇다면 2,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라도 작성하라 하여 고소인들은 겁에질려 고소인들이 원하는 대로 지불각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무인까지 날인하여 주었습니다.

고소인들이 3,000만원을 지급한 이후 다행히 딸은 고소인들의 품안에 돌아 왔으나, 고소인들은 범죄의 충격과 금 2,000만원을 추가로 달라는 피고소인들의 협박에 잠도 못 이루고 결국 정신병까지 생겨 현재 병원에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에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을 형법 제324조의2의 인질 강요죄로 형사 고소하오니 수사를 통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0월 0일

위 고소인 김 ○ ○ (인)

이 0 0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24조2
범죄성립 요 건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형 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복절차 및 기 간	<ul> <li>(항고)</li> <li>・근거: 검찰청법 10조</li> <li>・기간: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li> <li>(재정신청)</li> <li>・근거: 형사소송법 제260조</li> <li>・기간: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li> <li>(헌법소원)</li> <li>・근거: 헌법재판소법 68조</li> <li>・기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li> </ul>		

### ※ (1) 고소권자

#### (형사소송법 225조)

-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